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 제주 정책토론회

2019.4.16.(화) 14:00~16: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ISBN 978-89-6114-684-5 9333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 제주 정책토론회

2019.4.16.(화) 14:00~16: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프로그램

---

등록 (13:30~14:00)

---

개회 (14:00~14:10) 환영사 허법률 / 제주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 김민아 /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최희순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

---

발제 (14:10~14:30) 사회: 김철홍 / 광주인권사무소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토론 (14:30~15:30) ①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본 제주지역 학대 장애인의 현실 및 제언  
권오상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②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강경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③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이명용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④ 농인과 농사회, 농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부현철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⑤ 과연 제주도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중심으로  
고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⑥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틀어보기  
강인철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

종합토론 (15:30~16:00)

---

정리 폐회 (16:00~16:30)

---

# 목차

## [발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007

## [토론]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본 제주지역 학대 장애인의 현실 및 제언  
권오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041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057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이명용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067

농인과 농사회, 농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부현철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센터장) ----- 077

과연 제주도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중심으로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 089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틀어보기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099





## 발제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

-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I. 들어가는 이야기

- 권리대응 방법의 변화, 형사사법절차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차별을 법으로 정리하여, 혹시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법을 근거로 스스로 자신의 차별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10여 년 동안이 법이 해온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장애인의 삶은 미약하나마 이 법을 힘으로 많이 변화되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에 하나는 이 법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은 법이 시행되어온 이후 계속 고민되어온 문제이다. 법이 있지만, 법안에 직접 차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너무나 미비하다.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시정의 권고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다수 사례에서의 대응방법이다.

법제정 당시 장애인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독립된 시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장애계의 요구였다. 이러한 독립된 시정기구를 통해 시정권고에서부터 시정명령까지 권고에서 강제적인 절차까지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독립된 시정기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된 과정 안에서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제조치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법 시행 10년 동안 2건에 그쳤다. 결국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에 대한 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법원의 구제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리옹호기관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장애인관련 상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에 진정하고 6개월 1년씩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방법으로 형사사법절차의 활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 가장 많은 대응방법은 단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며,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법리적인 판단과는 달리 인권적인 상황과 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인권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는 그런 인권적인 판단으로 진정사건들을 처리했었다.

하지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정치적인 배경만을 가지고 인권위에 자리하게 되면서 인권적인 판단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하나둘 법

조인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결국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인권적인 기준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으로 치우쳐 법원과 다르지 않게 되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일선의 조사관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다. 거기에 인력부족까지 더해져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일 년도 지나 나도 내사건을 잇을 때쯤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갔다.

이렇게 인권위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장애인 관련 문제들은 끊임없이 인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전만 해도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 와 같이 법인단체도 아닌 순수한 민간의 후원과 분담금 체계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공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다양한 법률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특히 초기 장애계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그렇다보니 상담사례에 대해서 법률지문을 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엄청 크고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중에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변호사가 배출되고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계의 민간단체에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지원체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차별상황에 대한 소송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과정에서의 다툼을 통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형사절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시정권고 등의 결정을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진행하던 형사절차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근거만 타당

하다면 직접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빠른 판단과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당사자가 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반면,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 II.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하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접근)

### 1) 형사사법절차 의사소통조력인 제도의 시작

2013년 개봉한 영화중에 '7번방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한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남성(극중 '용구')이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감동적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이 영화는 하지만 결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지적장애인으로 갑작스런 체포와 경찰조사 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형사사법절차상의 지적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떤 과정에서도 이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조력인 또는 신뢰관 계동석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경찰로부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인공은 오로지 혼자서 그 과정을 견뎌내게 된다. 재판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지만 법정에 지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력인 등은 전혀 배치되어있지 않고 주인공은 사형선고를 받을 때까지 홀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단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현실에서 역시 많은 ‘용구’ 들이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에 홀로 서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2007년 법제정당시부터 의사소통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도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의 조항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던 법은 2011년 방화사건 가해자로 재판관을 받게 된 여성지적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법원에서 처음 실제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의사소통 조력 지원 사건개요>** -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01p

- 2011. 4. 11. 김00씨 방화사건 건 관련: 종로경찰서 강력2팀장, 유치소 김씨 접견
- 2011. 4. 15. 담당검사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 공문 발송함
- 2011. 4. 19. ‘장애여성, 거리에서의 노숙생활 20년’ 성명서 뿌림
- 2011. 4. 22. 담당검사와 통화: 구속연장확인(정신 감정상태 확인 위함), 피의자 심문 조사시 ‘신뢰관계 동석자 배치’ 를 하겠다는 약속받아냄
- 2011. 6. 14. 차혜령 변호사와 대책회의: 인덕원 서울구치소
- 2011. 6. 28. 김00씨 1차 공판: 재판부에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배치’ 를 요청함 // 재판부는 ‘장차법제26조제6항 정당한 편의라는 점을 근거로 확인하였음
- 2011. 7. 6. 김00씨 2차 공판: 장추련이 ‘한국 형사소송’ 최초 ‘지적장애인의 의사소

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역할을 지원함

- 2011. 8. 2. 김00씨 대책회의 및 회의목적: 공판 진행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장추련 의견서제출 및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김씨 향후 지원방안 논의//회의 참여자: 차혜령변호사, 장추련 사무국, 배복주(장애여성공감), 김영희(노들), 박문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비마이너 기자
- 2011. 8. 10. 김00씨 3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00슈퍼 주인부부 증언, 119소방관)/ 검찰 측 '김00씨가 무고한 비장애인 슈퍼에 방화를 한 것으로' 사건초점을 부각시키려고 함 - 2011. 9. 2. 김00씨 4차 공판: 검찰 측 증인 심문(경찰관, 노점상) 출석하지 않음. - 2011. 9. 21. 김00씨 5차 공판: 검사가 교체됨/ 이번 검사는 00슈퍼에 찍힌 사건과 다른 화재현상에 찍힌 사건을 판별하고자 함/ 또한 김00씨의 정신감정을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한 정신과 의사>에게 재요청함
- 2011. 10. 5. 김00씨 6차 공판: 검찰 측 증인(경찰관, 노점상)출석함. 두 사람 모두 화재현장에 있지 않았고, 김00씨를 화재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음/ 00슈퍼 화재 이후,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김00 씨일 거라는 추측형 말을 들었다고 함
- 2011. 11. 18. 7차공판, 재판부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없는 상황)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분노조절 등에 대한 훈련이 부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일부 책임은 사회와 가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현재 상황: 검사측은 1건의 방화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우리측도 재판부가 <분노조절 훈련 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치료보호 감호처분> 관련하여 항소함.

2011년 해당사건이 발생할 당시만 해도 영화에서처럼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무런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이하 평지상담소)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사건을 접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직접 사건 피의자인 당사자를 접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시 예상대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동석 등 장애에 따라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평지상담소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 있는 검사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법정에 한국 형사소송 최초로 '지

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을 배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법안에만 명시되어 활용되지 않던 의사소통조력제도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점차 적용되어나가기 시작했다. 현재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2) 형사사법절차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법 · 제도

### ① 법 앞의 기본권리

####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8년 12월 11일 비준, 2009년 1월 10일 발효)

##### 제12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누리야 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입법 또는 기타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safeguard)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보호자는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분쟁과 부당한 위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여 균형을 맞추고, 가능한 최단기간에 적용을 하며,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법률기구에 의한 정기 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호자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5. 본 조항 규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조사 및 기타 사전준비 과정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돕기 위해 당사국은 경찰과 구치소 직원을 포함하여 법의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촉진한다.

## ② 절차상의 권리규정

### 〈민사소송법〉

#### 제143조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43조의 2(진술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63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4조의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6조의 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 2항(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7조 제3항(선서의 방식)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제4절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

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편의시설 등 시설물접근 권리규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시행령>

##### 제3조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거. 교정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발달장애인법상의 관련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거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형사사법기관별 인권규정

###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 ④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75조(장애인 수사)

-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경찰관서의 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②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하여야 한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가족 등의 참관)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5조(장애인)

-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이 만나는 형사사법절차의 현실

#### ① 항소(抗訴)가 황소(누런소)로....? - 청각장애인 통역지원

법정에서 수어통역사가 항소를 황소로 통역했다는 이야기는 청각장애인분들 사이에서는 법정에서의 수어통역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오고 있다. 실제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통역에 문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 수어통역사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교육과정 등 수어통역사의 실력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특히 민사소송 등의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통역제공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사법절차상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체계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 18진정0384900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결정례

진정인 : 청각장애인 여성

피진정인 : 가정법원 판사, 조사관, 대법원장

주문 :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재판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을 개정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이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 11. 30., 2018. 1. 22., 2018. 6. 14.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장애인 사법지원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이 자비부담원칙이며 변호사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수어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8. 7.경 ○○법원에서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예납명령을 받았다. 수어통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자비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판단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정책·절차·관행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구체적 편의 제공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같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 출력기기, 수어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민

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 등에서는 같은 비용을 수어통역 지원 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어통역 등의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용 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비용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청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어통역비와 같이 비장애인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법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사법지원 및 수어통역 선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가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이었고, 피진정인2에게는 수어통역인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위의 사례는 최근 이혼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청각장애여성으로 소송을 제기한 남편역시 청각장애인이다. 하지만, 남편은 구화를 주요 소통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소통이 자유로운 사

람이었으며, 이에 소송과정에서 진정인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계속적으로 판사와 가사조정 조사관에게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였던 진정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으며,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었다.

결국 이후에 청각장애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결심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결정에 대한 요지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이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 법원이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진정인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에 다시 상담을 요청해왔다. 상담 요청의 요지는 이번 진정에서 기각 처리된 해당법정의 판사와 가사조정실 조사관에 대한 것이었다. 위 사건은 당사자는 이번 사례가 단순히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와 조사관 모두 관련한 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계속 청각장애가 있는 당신 때문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계속했다고 한다. 특히 가사조정실의 조사관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문자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계속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장애인당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태도로 느껴졌다. 또한 구화가 가능한 남편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사자에게는 제대로 내용을 전달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현재 당사자분은 가정 내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신 상태이다. 하지만, 이후에 사법절차 안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장애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성의 없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무엇인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통역 동시제공 첫 재판

2018년 11월 22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재판과정에서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 이에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의 재판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

위의 사례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온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최초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이 동시에 제공된 사례이다.

이번 재판 1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원고들에게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원고들은 한 자기만 선택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왔다. 그랬기에 두 가지 편의제공을 법원에서 모두 제공했던 이번 재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당일 청각장애인 당사자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모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두 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한 것은 법원에서의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 소송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관계가 있는 원고 또는 피고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 것은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 ② 의사소통조력인, 신뢰관계동석인, 보조인 등 인적지원체계

2011년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상의 의사소통조력인 배치에 대한 조항이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적용된 이래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특히,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홀로 이 어려운 절차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물며 당시 권리옹호 활동을 주로 하는 장애인 관련 상담기관 활동가들은 관련법과 규칙 등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며, 형사사법절차상 관련자들에게 일일이 제시해야지만 해당 장애인의 의사소통조력이나 신뢰관계동석인으로서의 참여가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지원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상의 의사소통조력인제도,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제143조2)의 진술보조인제도, 형사소송법(제163조의 2)상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발달장애인법상(제12조)의 보조인제도와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있다. 이 관련한 제도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라는 주요한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들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장애인 등이 혼자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 그리고 법원의 심리과정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는 관련법이나 규칙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며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사사법절차상의 많은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조력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관련단체나 상담소 등과 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서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발달장애나 언어장애인으로 인지되는 사람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주변에 가족 등 신뢰관계동석인으로서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가족 등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여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장애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력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기본소통이 가능한 것과 조사과정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현재,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은 이러한 절차상에서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동석인의 지원행위를 방해**

발달장애인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미는 행위로 인해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현장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신뢰관계동석인으로 참석,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녀를 대신해 의견을 이야기하자 “어머니 자꾸 이야기해서 안되겠어요 나가 계세요” 하면서 조사실에서 나가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을 단독으로 조사, 조사 이후 진술조서를 본 어머니가 발달장애1급인 자신의 자녀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쓰여 있음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자 “진술조서에 도장 찍지 않으면 아들이 불리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장을 찍도록 함

### **법정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배치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결정권 침해**

뇌병변장애1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여 함께 활동하는 활동지원사를 의사소통조력인으로 요청함. 이에 판사가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사소통조력인은 법원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겠다고 함. 이에 장애인당사자는 언어장애가 매우 심한 경우로 낮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고 설명함. 하지만, 결국 판사는 차기 재판에서 복지관 관계자를 의사소통조력인으로 배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복지관관계자는 결국 의사소통조력을 포기하고 활동지원사의 조력으로 재판이 진행됨.

위의 사례는 신뢰관계동석인으로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게 밖에 나가있도록 하거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겁을 주는 행위 등은 경찰서 출입의 경험이 없어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자주 만나게 되는 차별상황이다.

위의 사례 중 법정에서의 사례는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당사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



정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소통조력인과 관련해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해당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서로 의사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③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전담검사, 전담사법경찰관

발달장애인법(제13조)상 발달장애인의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경찰관과 검사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발달장애인법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등이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내용이 쉽게 왜곡되고 이러한 조사결과로 인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실이 더 확대되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담제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어서 활동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적용 초기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전담제도는 결국 꼭 그 전담인력을 통하도록 하므로 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담제도가 법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관과 검사 모두가 직무교육과정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을 배치하고 반복해서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④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제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대표되는 법률구조제도와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이다.

##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법률구조법」 제8조).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신청요건 :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대상사건 :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 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신청요건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장애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단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을 물으면,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소송의 가능성 여부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왜 어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신 대부분의 장애인당사자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소송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으시고 장애인쪽 상담소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실제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재판이 있을 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상담직원분 등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과정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다.

구조제도는 말 그대로 사법절차에서 그 과정에 어려움이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은 실제로 이 절차 또한 진행하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결국 형사사법절차 상 권위적인 운영방식으로 발생하는 접근의 문제를 구조제도에서조차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⑤ 확인할 수 없는 교정시설안의 장애인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교정시설 구금시설에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상담소 평지로 일 년에도 몇 번씩 교도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곤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교도관이나 주변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요청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연이다.

현재 장애인관련 권리옹호 기관 등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등록 등을 하지 않아서 교정시설 내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정시설에 가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와 관련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갔을 경우 장애를 알지 못하는 내부 사람들로부터 행동이 느리거나 무언가 잘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격리는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장애인이지만 인지가 되지 못해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 장애인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IV. 맺는 이야기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또한 관련한 법 집행 기관들 역시 장애인과 같이 권리침해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 안에 장애인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체계와 지원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어떤 경찰관,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절차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제는 형사사법절차 안에 장애인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위해 고민되

는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①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체계로 명시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은 모두 장애인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지침의 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의 바쁜 업무 안에서 제대로 적용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직무규칙 등 여기저기 관련법 안에 잠깐씩 언급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일일이 법을 찾지 않는 이상 관련내용에 대한 법적기준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법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법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련법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 지원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직무교육과정안에서도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직무교육과정안에서 반드시 장애인인권교육을 배치하고 관련한 교육과정에서 일 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제기 방법 마련  
 현재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발달장애인인데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외하고는 경찰내부에 감사와 민원제기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감사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대로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안 등에 조사하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당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도 담당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 ④ 권위적인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형사사법절차는 매우 권위적인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적인 태도가 결국 장애인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매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다.

우선 경찰서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건 사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형사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은 언어장애가 심하시거나, 청각장애나 발달장애로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과연 사건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 장애인당사자를 돌려보낸 것인지 고민이 있다.

두 번째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대한 안내, 검찰에서의 약식기소와 관련한 안내 또는 법원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 등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안내가 문자와 우편으로 도착하면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바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연락받은 당사자의 장애가 고려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의 태도이다. 위에 내용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장애인이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 없이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와 같은 이야기를 매우 간단하고 쉽게 건네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간 당사자에게 이걸 해봐야 소용없다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형사사법절차는 서류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과정 안에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장애인의 의견은 쉽게 무시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국 상담소를 찾아오게 된다.

#### ⑤ 형사사법절차 기관들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이다. 법치국가에서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절차의 체계 안에서 장애인은 이 절차와 과정 안에서 다시 2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 각각의 기관의 절차와 체계가 장애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법무부와 법원이 모두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관련부서와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관련 활동은 실질적인 형사사법절차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안에 장애인의 상황을 함께 짚어가고 고민하는 것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언젠가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해질 그날을 위해, 그리고 형사사법절차가 장애인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권리옹호 체계가 되기를 바라며…….





## 토론 ①

#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본 제주지역 학대 장애인의 현실 및 제언

권오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본 제주지역 학대 장애인의 현실 및 제언

권오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1. 들어가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06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을 비롯하여,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59조의10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2 (사후관리 등)의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되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2017년 0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됨을 시작으로, 전국의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순차적으로 설치·운영되었으며, 제주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러한 과정 속에 2018년 03월 개관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학대받지 않는 환경의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자주적이며 공정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장애인학대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이를 위한 전문적 역량의 강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제주도민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처치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그림-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업무

제주권익옹호기관은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과 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장애인의 응급보호를 포함한 각종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신속히 일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하고 있다.

## 2. 제주의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현황

제주권익옹호기관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례에 개입하는 절차, 즉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는 크게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응급조치 - 피해자 지원 - 사후 모니터링’의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 1) 신고접수 현황

제주지역에서 신고접수 된 사례는 전체 9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1〉 등과 같다.

구분	계	2018년										201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학대	50	3	3	1	2	5	2	6	7	13	4	3	1
일반	49	3	3	3	3	5	2	4	3	8	1	9	5
계	99	6	6	4	5	10	4	10	10	21	5	12	6

〈표-1〉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접수 월별 현황

### 〈신고접수 내용〉

구분			건수
계			99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일반사례	신체적 학대	6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10
		유기·방임	2
		중복	13
		중대사례	중복
일반사례	차별상담		4
	정보제공		27
	정서적 지지		10
	기타		8

### 〈신고접수 방법〉

구분	건수
계	99
전화	62
온라인	1
내방	22
인지	13
기타	1

〈그림-3〉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접수 내용 및 방법

제주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는 99건으로, 이 중에서 62건은 신고자가 전화를 활용하여 신고접수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인 1644-8295의 안내를 비롯한 장애인학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결과로 보인다. 총 99건의 신고 사례 중에서 절반이 넘는 50건의 사례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라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주 장애〉

구분	명수
계	50
지체장애	7
뇌병변장애	7
시각장애	1
청각장애	1
지적장애	25
정신장애	6
안면장애	2
뇌전증	1

〈부 장애〉

구분	명수
계	50
없음	44
시각장애	3
언어장애	1
지적장애	2

〈그림-4〉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피해자의 장애 유형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50건 중에서 학대 피해장애인이 지적장애인 경우가 27건(주·부 장애 유형 포함)으로,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상당수가 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가 동반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무엇보다도 장애 유형을 떠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든 피해장애인은 학대 피해에 대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기에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지역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철한 신고가 더욱 요구된다.

## 2) 현장조사 현황

제주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50건 중 27건을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2>와 같다.

구분	건수
계	50
학대사례	27
잠재위험사례	3
비학대사례	20

<표-2>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학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27건의 사례는 제주권익옹호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례지원을 하였으며, 잠재위험으로 판정된 3건의 사례는 추후 장애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입하여 사후관리(모니터링)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주의 장애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였다.

<학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구분	건수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
	부모	7
	자녀	1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그 외 친척	4
	계	50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1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13
타인	동거인	3
	지인	7
	고용주	3
	모르는 사람	2

#### 〈학대 피해자와의 동거여부〉

구분	건수
계	50
동거	17
비동거	33

#### 〈학대 발생 장소〉

구분	건수
계	27
거주지	11
직장 및 일터	3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3

#### 〈그림-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50건 중에서 학대 피해장애인과 행위(의심)자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21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거주시설)인 경우가 14건, 동거인인 경우가 3건으로 전체 38건이며, 행위(의심)자와의 동거 여부에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 중인 경우도 17건이었다.

또한, 현장조사의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한 사례 27건 중에서 학대의 발생 장소가 거주지인 경우가 11건이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인 경우가 13건으로, 전체 24건의 사례가 피해장애인이 거주·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장애인학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의 장애인학대가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3) 응급조치 현황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 판정사례 중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사례는 전체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3〉과 같다.



구분	건수
계	6
응급보호(쉽터)	2
응급보호(기타)	3
의료기관 연계	1

〈표-3〉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 현황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1건은 차치하고, 응급보호 5건 중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 쉽터로의 연계가 2건이고, 기타 거주지로의 연계가 3건이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지역 내에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쉽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분	명수
계	5
남성	3
여성	2
기타	0

〈표-4〉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응급보호 중인 피해장애인의 성별

특히, 제주권익옹호기관에서 응급보호를 실시한 피해장애인 5명의 성별은 각각 남성 3명, 여성 2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 쉽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은 여성 2명뿐이며, 남성 3명의 쉽터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학대 피해장애인 쉽터가 아닌 별도의 거처를 확보하여 제주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보호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 4) 피해자 지원 현황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제주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은 전체 17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5〉와 같다.

구분	계	2018년 201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건수	175	11	19	9	25	17	18	5	8	18	15	24	6

〈표-5〉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지원 월별 현황

평균적으로는 학대 피해장애인 1인에 대하여 14회 정도의 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월별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학대 피해장애인 간 지원 및 상담 건수의 차이는 상당하였다. 적게는 1~2회로 사례가 종결되기도 하였으나, 많게는 20회 이상의 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사례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했다.

대체로 그 이유는 피해장애인이 학대 피해로부터의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또는 자원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내에는 피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응급보호 중인 피해장애인의 경우에는 본래 거주지로의 복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주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회복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생활 등 일상복귀 이후의 생활에 관한 부분까지도 상담과 지원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 5) 사후관리(모니터링) 현황

제주지역의 장애인학대 사례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례는 전체 11건으로,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6〉과 같다.

구분	계	2018년												201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건수	20	0	0	2	3	3	1	1	2	3	1	3	1		

〈표-6〉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관리(모니터링) 월별 현황

제주권익옹호기관은 학대 8건과 잠재의심 3건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전체 실시 건수는 20건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 7건의 사례는 현재 진행 완료되었고, 5건의 사례는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이 본래의 거주지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피해장애인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위자로부터 학대 재발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제주의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현황을 요약하면, 지난 1년간 제주에서는 평균 월 8건 이상의 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월 2건 이상은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제주권 익용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의 이와 같은 학대 신고율의 추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례가 발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장애인학대 사례에 개입하여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나 자원 등의 연계는 원활하지 못하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역할인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제주지역 학대 장애인의 현실 및 제언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그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 되었다. 이후 형사사법 및 행정절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및 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메뉴얼등 다양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애인의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 가. 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장애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항에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교육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4조 1항의2)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는 여전히 깎뺀 채 있다. 실제로 권리의 침해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정보조차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되레 당사자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증인을 데려오라’ ‘녹취내용을 내게 들려줘도 소용 없다. 녹취록을 작성해오라’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무리한 요구들이 빈번한 현실이며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도, 절차도 그 무엇도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환경적 요인과 장애의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보습득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게 돼 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사건의 경우 다행히 옹호기관에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상담과 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요구대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은 무력감으로 인해 이 사건의 행위자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했다.

또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임금미지급은 물론이고 폭행, 협박,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소위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6월 징역형, 150만원 벌금형 또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지역의 관행이었고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피해당사자가 장애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규정의 해석을 통해 선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법 및 행정절차의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무색할 만큼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를 더 준수하고 국가의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 나. 학대 피해자 신변보호의 한계

피해장애인에 신변보호 행정체계 역시 한계가 크다.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행위(의심)자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행위자의 접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행정 조치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히, 학대 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변정보들이 고스란히 행위(의심자)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실제로, 응급보호 중인 피해장애인의 주거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 및 자원의 신청,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는 보호의무자가 행위자라할지라도 고스란히 현재 법적 보호의무자에게 공개가 된다.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대 피해에 관한 것을 별도로 요청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고스란히 행위자에게로 안내되었다. 굳이 행위자가 찾아보지 않아도 아주 손쉽게 문자서비스로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들의 신변보호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행위자가 해코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들에 대해 보복 행위가 가능하기에, 사전 대비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다. 학대 피해자 응급조치의 한계

학대 현장조사 시, 피해장애인과 행위자의 분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해하는 사실이다. 학대 현장에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대 사례지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실제 피해장애인을 학대 상황으

로부터 응급 분리하더라도 임시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제주지역의 현실이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된 거주공간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이다. 제주지역 내에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는 입소정원이 최대 4인이며, 피해장애인의 남녀 성별에 따른 분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에 여성 피해장애인이 입소한 상황이라면 남성 피해장애인의 이용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기존 단기보호시설의 공간을 활용해 쉼터를 운영하다보니 일반 보호인과 학대피해자와의 별도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원인력 매우 부족해 24시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쉼터의 중요기능인 피해자의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간 분리와 적절한 지원인력 배치의 개선이 시급하다.

## 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및 자원의 부족

학대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장애인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별로 피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자원의 욕구는 다양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피해자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제주지역 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장애인에게는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제주지역 내에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각종 제약이 있어 이용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주지원의 경우에는 제주지역 내 쉼터나 시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인 보호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복지지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그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지역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역시도 인원 초과 등의 이유로 이용에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장애인의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

나, 후견인 신청 이후 지정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걸린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측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의 측면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학대 피해로부터의 회복이나 이후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 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대 피해장애인에게는 임시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로부터의 회복이나 일상복귀에 따른 자립생활의 영역까지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앞서 언급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안전적 보호 기능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과 역량강화 기능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마.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부재

학대 피해장애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서 피해회복과 더불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대 피해를 겪었던 본래의 거주지로 복귀하는 것은 행위자로부터 학대의 재발 위험이 있기에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결정하고 영위하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현재 상황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자기 선택과 결정에 따른 삶의 욕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 습득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주거 및 생활비용 등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나, 피해장애인이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학대피해자 쉼터의 입소 이후 갈 곳이 없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응급상황을 담보해야할 쉼터의 기능마저도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까지도 반영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4. 나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통해 학대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당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같은 상황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대책이나 체계에 대한 고민은 그저 고민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학대사실은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두고 이후 학대 피해자에 삶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학대 피해장애인과 마주할 때면, 이들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신변정보가 행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더라도 제주지역 피해장애인 지원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들은 무력감마저 들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4조에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미명 속에서 인권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에 가장 심각한 권리의 침탈이며 범죄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이 침묵 속에서 비인간적인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 체계들이 확보되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제주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 토론 ②

#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강 경 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의미 및 필요성

사법 및 행정서비스 이용권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를 지원받을 권리이다.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라는 점, 사법절차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는 점,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장애인이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의 경우 복지서비스, 연금 등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관행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고용,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절차에서의 적극적 권리보장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등 권리보장 제도가 대폭 확충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인 보장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법률 및 제도 현황

### 1.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 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장의 신청 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① 경찰 공무원 대상 인식교육**

「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제12조 1항)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② 보조인과 신뢰관계인 제도(2항, 3항)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① 검찰총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 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해양경찰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따라야 한다.

### ① 전담조사제(1항)

「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성폭력특례법」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와 전담 경찰관제도 등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② 전문교육(3항)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제13조 제3항)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밖에 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밖에 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현장조사)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대상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 제14조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 4. 현장조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현장조사)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사법경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현장에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면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차별행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를 사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참여와 자기결정의 활성화

최근에 발달장애인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참여와 당사자에 의한 자기 결정 그리고 자기옹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 권



리보장의 내용은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당사자에 의한 자기결정 활동을 지원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먼저 「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제12조 1항)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제13조 제3항)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 당사자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인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 전문교육은 전적으로 비장애인 활동가 내지는 사회복지사등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여성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을 남성이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 자신의 사례를 감정적, 정서적, 그들의 울림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교육, 전문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교육의 자료로써 어떻게 재구성할 것 인지에 관한 실질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쉬운 문서쓰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부문서를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하여 어떻게 재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절차 매뉴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 발급 절차 매뉴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참여, 자기결정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후견인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의 주체는 당사자가 아닌 활동가, 복지사, 경찰, 판사등의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일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목소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들은 권리구제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그 집단의 자기권리옹호 행위들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기본입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외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자기참여와 자기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토론 ③

#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이명용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이명용(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한국 사회는 기계적인 연대를 통해 장애인들을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보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급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효용을 따지는 인식이 팽배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경제적인 효용이 낮은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이나 사업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것은 유년시절부터 장애인은 불편하고 일반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론과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로 편견이라는 생각을 저변에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중 상당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했을 때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 받을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정신장애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되어 있다.

2007년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적어도 법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정서에 비취볼 때, 가히 혁명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구상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악용 될 수 있는 현실 은폐에 도구로 사용되기 쉽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위험하다’, 혹은 ‘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사회가 가진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정신질환자 자격 취득제한 법률들로 이어졌고, 최저임금 예외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규정을 예로 들며 “직업재활은 허용하겠지만, 사회복지사는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포용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나 있다. 정신 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상당히 많다. 그 실재 예로 정신질환의 병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8조)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조),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조),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조),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주조사(주세법 제19조), 집달관(집행관법 제21조),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

정신장애인도 자격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리고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장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를 다른 장애와 별도로 특별한 자격결격 또는 운전면허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 번 차별을 받는 삼중에 고통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위협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이 저변에 깊게 깔려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래적인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사회공동체로부터 분리? 격리시키거나 소외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신보건법이 실현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표는 정신질환자를 가능한 한 장기간 입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해가 갈수록 정신장애인을 격리?수용할 있는 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진정한 목적과는 배치된다. 정신장애인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회적인 복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타 법과 법률에 대한 차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자신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듯이 요청하고 부탁하는 형식절차를 뛰는 것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귀일 것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씨는 “정신질환은 단지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신장애가 발생해도 돌아갈 학교, 직장이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최고의 약은 바로 ‘직업’”이라했다. 정신장애 등록을 해야 의무고용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고용, 취업 장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 등록을 하면 여러 사회적 편견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배제조항 때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부분 직종은 단순노무직이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당사자들은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직무 및 근무여건은 정신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장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 장애인복지법 15조를 보완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더 넓은 복지 체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지침과 다양한 직업 인프라를 개발 및 발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2. 정신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종 개발과 정신장애인 취업 이후에도 소득 크기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유인책 마련해야 한다.

3. 장애는 각 특수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와 구분됨을 인식하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재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직업유지 및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져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급성기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스트레스 및 증상관리에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책 장애인 직업재활 인건비지원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 지원기준은 장애등급(중증과 경증)과 성별(남녀)에 따라 다르며(고용촉진 장려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 근거는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이다.) 고용촉진 장려금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제주도내 10개 직업재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683명과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290명에게 지원되면서 장애인 고용유지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장애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을 갖기 위한 개인적인 측면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근로자로서의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Danley & Anthony, 1978; 나운환, 장원주, 2002 재인용). 초기의 고용 경험은 근로자로서 기술, 선호도, 흥미, 적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세계를 배우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은 이러한 직업 경험이 제한되어있고,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적인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직업선택이 제한되어 있다(Danley & Anthony, 1978; Russert & Frey, 1991; 나운환, 장원주, 2002 재인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내 사업장 및 기업과 연계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고용 부담률을 줄이는 방안도 장애인직업재활에 있어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근로에 대한 기회가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

족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 일 수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어 최저의 삶이라도 혹은 병원비 지원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스로 재활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에 대한 역할을 제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의료적인 판단과 근로에 대한 지원기준을 수급비에 더해져 나간다면 직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손실을 줄여 나갈 수도 있겠다. 장애인들도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위협 하지도 불편한 존재도 아니라는 편견을 상쇄시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고취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앞에서 나열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적용이 타른 법률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석과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법률적인 차별과 실제적인 차별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먼 얘기인 것 같다. 법과 법률이 차별적인 내용을 상쇄한다고 해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은 조현병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범죄가 일반인들도 묻지마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불편한 존재로 낙인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아플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법과 법률적인 차별보다는 현실의 차별적인 인식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적용시키고 해석해야 한다. 정신 장애인들은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 이유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및 약물 중단 등 다양하다. 정신장애인들은 증상관리 및 직업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무의미 해 보인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큰 틀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한다.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 의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종종 마주한다. 또한, 강제입원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에서 배제되어야 하였다. 이런 사례는 언론에

서 공공연히 보았던 이야기다. 현재 개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들에게 장애를 구성원을 돌보도록 하는 우리사회가 가혹하기까지 하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나 형제자매들은 오랜 시간 우리사회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해온 것은 아닌가 싶다. 국민은 나라가 책임져야 하지만 미미한 지원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장애를 가진 가족들까지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요인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향후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사회의 허용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고 우리사회가 인권감수성 키워 큰 틀 안에서 차별이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적장치가 바탕이 되어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존중하고 존중을 받는 존재로 인식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2016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 국가인원위원회
- 2012년 5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 21권 제 1호,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은경, 윤숙자, 최송식
- 2013년 5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 22권 제 2호, 제조업에 종사하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변은경, 전성숙, 김미영
- 2018년 5월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8년 8월 29일 beminor 장애인의 주홍글씨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 기사 참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법제처 -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3.30]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4., 2018. 6.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4., 2018. 6.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③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4., 2017. 5. 29.>

## 토론 ④

# 농인과 농사회, 농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부현철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



# 농인과 농사회, 농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부현철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

## I. 농아인의 일반적 고찰

### 1. 청각장애인의 이해

청각장애란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하며, WHO에서는 청력에 따라 90dB 이하를 난청으로 91dB 이상을 농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dB 이상을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각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여 청각장애인 또는 농아인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아인이라 하고, 말하기와 독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화인(혹은 난청인, 청각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김현주, 2003). 실제로 농아인과 구화인은 같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농아인의 경우 농아인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그 안에서의 동질적인 만남을 선호한다. 반면에 구화인은 발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인처럼 보이기 쉽고 따라서 같은 구화인 뿐 아니라 청인과의 만남에도 익숙한 편이다. 이들은 자신이 쓰는 언어만이 아니라 주로 만나는 사람이나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아인이나 구화인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농을 나타내는 용어를 Deaf와 deaf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deaf는 병리적으로

농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Deaf는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문화적 소수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김명희, 2002). 이는 장애가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 2. 농사회(Deaf Community)의 이해

사회는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로써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킨 집단으로 농사회는 목적, 그 조직에 있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Deaf)이라는 상호 동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인정된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며 농인들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다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농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 농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

둘째, 수어라는 언어가 널리 통용되는 사회,

셋째, 농인이 주도권을 갖고 농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이준우, 2004). 대부분의 농아인은 청인들과 다르게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모든 성인 농아인의 80% 이상이 같은 농아인과 결혼하고 있으며 양쪽 배우자 모두 농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아인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며 농아인은 언어나 가치관, 관습 같은 문화적 유산에 의하여 결속되며 같은 장애와 언어를 공유하는 농아인과 함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농인사회이다. 과거에 농인사회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수어라는 독특한 언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되어 왔지만 이제는 농인사회와 함께 생활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획득한 청인도 농인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청인들은 농인이 아니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농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농인에게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농인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Lane, Hoffmeister & Bahan, 1997).



### 3. 농문화(Deaf Culture)의 이해

농인들은 청각 대신에 시각에 기초하는 독특한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시각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정된다. Padden(1998)은 문화란 고유의 언어, 가치, 행동방식, 전통을 가진 일련의 학습된 행위라고 하였으며 문화란 상징에 의해 획득되어 전승되는 행동양식 등 인간집단의 특유의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에서의 의류, 음식, 도구와 같은 유형적인 것뿐 만아니라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상징 등과 같은 무형의 측면에서 어떤 집단과도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혜영, 2013). 이러한 개념을 기초하여 독특한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농문화”라고 하며 이런 농 문화는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주로 시각에 의해 이루어진다(Schein, 1989). Lane(1984)에 의하면 문화는 어떤 지리적 단위 안에서 그 지역의 체제에 알맞게 형성된 사회화 유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문화는 제각기 특유한 속성을 가지며 다른 문화와 우열을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농인의 문화는 그 고유한 특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강주혜(2002)는 농인 사회를 농인세계와 구성원들이 같은 장애나 언어로 같은 문화적 유산이라는 가치관과 관습에 의해서 결속되며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다른 대부분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농인들도 함께 공유하게 되는 독자적 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농학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농문화는 거의 대부분 농학교에서 시작된다. 만약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미 그 학생은 농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학교라는 집단을 통해 농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어는 농인들의 주 언어로 농문화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고 농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를 통해 농문화의 기반이 형성된다. 농문화의 활동은 손짓이나 몸짓 그리고 얼굴 표정을 통하여 문화적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기, 희극, 공연, 수어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세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출판 등 농문화에 한층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편의기기로 팩스나 핸드폰, 문자단말기, 자막수신기, 깜박불, 진동식 시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병리화는 청력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이러한 시도는 Woodward(1982)는 농인들을 농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파악하였으며 Lane(1984)도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농인문화의 기준에서 청력 상실 정도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 문화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음성언어, 문자언어, 영상 등 총체적으로 우리 삶에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음성언어 전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농인들은 소리정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 음성언어에 의존하는 부분을 문자언어나 수어로 대체(수어 자막삽입, 수어보급 등)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농인들도 자신의 느낌으로 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음악과 미술, 다양한 스포츠 등 뉴스나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농인문화는 농에 대한 긍정적 개념과 긍지를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농인문화의 발전은 곧 농인의 위상 강화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이준우, 2004).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 4. 농정체성의 이해

농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Holcomb(1997), Weinberg & Sterritt(1986), Maxwell(1990), Glickman(1993)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Holcomb(1997)은 농 정체성을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균형적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 문화와 청 문화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함이 없이 똑같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잔존 청력에 관계없이 이를 잘 활용하며 수어도 완벽하게 구사한다. 둘째, 농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농 공동체와 관계를 더 가지고 있으나 청인과의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농인들과 매우 잘 지내고 대부분 함께 사회생활을 하며 청인과는 이웃 혹은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호감을 얻기도 하나 보통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과의 광범위한 사회적 접촉은 피하

려고 한다.

셋째, 청인중심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 공동체와 제한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농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농인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전문직 이거나 농인 사회에 관심이 없는 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

넷째, 문화적 분리 정체성은 농인과의 교류를 선호하며 청인과 최소한의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으며 청인들에 의해 중압감을 느끼며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다섯째, 문화적 고립 정체성은 농인들과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구화 중심 생활을 하며 수어를 배격하며 청인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여섯째, 문화적 주변 정체성은 청인과 농인 모두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농인으로부터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성장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사회적인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수어능력이 부족하여 농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구어적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청인 친구들 사이에도 상실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포로 정체성은 농공동체와 농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부모에 의해 수어나 농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차단된 유형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농인이 있다거나 농문화가 있다는 것에 인식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Weinberg & Stieritt(1986)은 농인정체성, 청인중심정체성, 이중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인중심정체성을 가진 농인보다 이중정체성을 가진 농인이 타인에 대해 관대한 수용적 행위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준우, 2004). Maxwell(1990)은 농인정체성과 청인중심정체성으로 구분하고, Glickman(1993)은 Sue의 소수집단 정체성 발달이론의 틀을 빌려와 농정체성 발달이론을 만들었으며 이 이론에서 농인의 정체성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청인중심정체성은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농은 청인과 비교하여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덜 건강하다고 이해하고 사회기술이나 균형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농인은 주로 중도에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이며 태도나 행동, 의사소통 측면에서 청인의 양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둘째, 주변정체성은 소수집단의 정체성 발달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단계이며 이러한 농인들은 자신의 농에 대해 혼돈과 양가감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며 의사소통 측면에서 국어와 수어가 모두 빈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 사회나 청 사회에서 모두 부적절한 사회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인사회와 청인 사회 중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는 준거집단이 자주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몰입정체성은 농 문화와 청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두 문화 중에서 농 문화와 농을 강조한다. 이러한 농인은 청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대신 농 세계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농을 치료받아야 하는 장애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인은 항상 옳고 청인은 불공정하며 청인들에게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이중문화정체성은 농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하고 청문화와 농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특징을 보이며 수어와 국어를 함께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즉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은주 2017)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 II. 농아인차별 영역 및 차별실태

### 1. 소통 단절로부터 기본권 침해

농아인은 ‘소통’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에서 소수의 농아인이 사용하는 수어는 대중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농아인은 언어적·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하여 청인과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므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다(이미혜,2004) 또한 수화를 모르는 중도청각장애인이거나 구화인인 경우, 문자나 자막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 2. 교육 배제 및 정보 문화 향유 박탈

농아인은 교육 기회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며,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역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이들은 교육 시설이나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 및 교육 방법의 문제, 교육 내용의 비적절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마친 농아인이라도 동일한 교육을 받은 청인보다 학업 성취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아인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듣지 못함으로 인해 시각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제한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 3. 취업 및 일터에서의 고립경험

청인과 소통에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농아인 대부분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소외되기 십상이다. 이들은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이 쉽지 않을뿐더러, 듣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이기 때문에 청인 위주로 구성된 일터에서 다수의 청인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아인은 표현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지니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등한 평가와 보상체계에도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한다. 결국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직이 잦은 농아인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며 이들은 상당수 임시직으로 고용된다.

## 4. 가족으로부터의 차별

가족의 지지는 비장애인의 삶보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 더욱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력 손실을 갖고 있는 농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충들과 그로 인해 농아인에게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족들

이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아인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왔고 그들에게는 귀동냥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 상식의 측면이라 불리는 것들, 혹은 성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들이 농아인에게 특히나 더욱 더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이들과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아인이 외형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사회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역시 간과되어온 것이다. (이정란, 2005)

## 5.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기회 박탈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서 의료보장의 욕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아인의 고령화에 따른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장애인 개발원, 2013). 의료에 대한 보장은 건강과 직결되며 인간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써 취약계층인 농아인에 대한 의료적 안전망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입장에서 농아인을 위한 진료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는 청인들이 농아인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사 선생님들이 농아인을 진료할 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농아인의 정당한 의료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아인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주로 참고 견디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복지와 의료의 중간적 매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의료적 역할에 있어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기본적인 수어교육을 통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본적으로 의료적 행위에 있어 고지하거나 자신이 받을 기본적 권리를 타인의 선택에 따라 박탈당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 III. 제언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이 청각장애인에게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며 이들의 사회활동은 물론 경제생활이나 직업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관별 보급 및 확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1조에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통역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문자통역은 알려지지 않아 문자통역서비스 제공에 이해가 없어 사실상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통역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표적인 편의라는 걸 인식하고 속기사나 문자 전담 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행정에서의 수어통역은 현재는 법원 지정통역사를 두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이 루어지고 있으나, 일방적 지정통역사가 아니라 농인 입장에서 수어통역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인 경우, 농아인이 직접 수어통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법 개정을 통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인 경우 무엇보다도 의료 전문 수어통역사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초진에 대한 두려움과 오진에 대한 염려로 전문 수어통역사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농아인의 의료권은 단순한 의료의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입원 과정에 있어 각종 의료적 지원, 편의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방송, 통신서비스의 확대, 병원 내 수어용 검색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아인이 보편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는 기본적 의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거점병원 중심으로 농아인 전용 병실 등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아인이 주로 청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누지 못함으로 소외감, 절망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회의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농아인을 치료 하는 전문 병원의 신

설이나 병실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및 일상생활분야인 경우, 농아인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조차 통역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족, 특히 부부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서 조차 소외되는 일이 다반사다. 따라서 수어통역사의 확대, 세분화된 전문성을 위한 여러 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농아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농인, 청각장애인, 난청인, 구화인, 농문화, 농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에서부터의 철저한 인식 전환 교육,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현행 법률안에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임의 규정을 강제조항을 개정하려는 욕구야말로 진정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지각과 차별 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례 발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무하다시피 하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아인협회를 비롯한 농아인복지 기관에서 사례발굴과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 원고는 새로운 조사가 아니라 아래의 논문과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화’가 ‘수어’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어 혼선을 막기 위해 ‘수화’를 ‘수어’로 수정하고 ‘건청인’을 ‘청인’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정란(2005). ‘농아인’이 경험하는 생활 제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최은주(2016). 농아인의 입원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전지수(2016).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보건복지부(2013).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의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단행본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대신 방안 연구. 단행본



## 토론 ⑤

# 과연 제주도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중심으로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과연 제주도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중심으로

고은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1. 들어가며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는 4월 20일은 1981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8일 경기도 수원역에서 경기도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수원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면서 시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수원역’이 등장하여 각종 SNS 등에서 “무슨 시위하길래 이렇게 길이 막혀?”, “버스길목 막아서 집에도 못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넘넘 짜증납니다” 등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우리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또한 “수원역 일대 사회단체 시위로 극심한 교통정체”, “수원역,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로 퇴근길 교통대란”, “퇴근길 수원역 ‘교통마비’ ...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위 ‘왜’”, “수원역,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위”, “수원

역 일대, 장애인차별철폐 시위로 퇴근길 교통대란” 등의 제목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거주 시설 폐쇄 등 장애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교통 정체와 시민불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 2.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의 역할 제고

첫째 장기적으로는 법제정 당시 장애계의 요구처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의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용자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복합차별(여성?장애인?고용차별의 혼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등의 비판에 따라 노동부와 여성부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 존치하고, 차별의 판정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제정·정비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을 구축하고, 차별시정기구 상호간 조사·구제권한의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여, 업무 간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분담과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는 현행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보완하며, 시정명령, 소송지원, 악의적 차별의 경우 별도의 배상금 지급 결정, 증명책임의 전환 등 구제수단의 다양화와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서 법조인 중심을 탈피하고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차별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인력의 충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 3. 지속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보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제5항의 ‘신체장애자’ 를 비롯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11조 ‘농아자’ 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청각장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하여, 장애인의 주체성이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잠재적인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의 경우에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어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치법규 시스템을 통해 전체 907개(조례 731개, 규칙 177개)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

습니다. 시간 등의 제약으로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처 확인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번호	자치법규명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심신장애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심신장애
5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심신장애
8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심신장애
1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1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심신장애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심신장애
1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1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1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심신장애
17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심신장애
18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칙	심신장애
1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신장애
20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회의규칙	심신장애
21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신쇠약
2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정신장애
2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정신장애
24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정신장애
2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정신장애
26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신장애
27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장애자
2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자

29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정신질환
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의사발표의 정확성
31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의사발표의 정확성
3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3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4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신체·정신상의 결함
3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신체·정신상의 이상
3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편의제공 불비

검토된 34건의 조례 및 규칙과 2건의 규정 중 ‘장애자’, ‘신체·정신상의 결함 또는 이상’ 등 장애인 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주사회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심신장애’, ‘심신쇠약’, ‘정신장애’, ‘정신질환’, ‘의사발표의 부정확성’,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장애의 범주가 매우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장애인 개념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들 장애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2조제1호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 제시나 개별적 직무의 수행정도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해촉하는 것은 직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공무원 임용 및 수습직원 채용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일정한 신체기준

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용방법 등 고려하지 않은 직 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경찰 등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직무수행의 성질상(기획행정, 총무인사, 사이버수사, 정보, 보안 등) 일정한 수준의 신체기준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사람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의 경우처럼 본회의 방청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의록 공개 및 열람 관련해서도 편의제공 규정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열람·배부 방안이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인을 고려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시 장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편의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법규 조문 내용에서 “어떤 일이 성립, 진행에 거치적거려 방해하거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맥락상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비하감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권과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폭력 예방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긴급 지원 등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 5.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당시에도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정신장애인 = 위험인물 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뒤이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소수자로서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보도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는 전체 기사량에서 자치하는 극히 일부로써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물론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 그리고 저와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조력인 배치 등 장애인의 조력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 장애인 등 도민과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에게 교육·홍보가 절실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도민에게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추진계획과 결과를 모든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이해교육은 대부분 대강당에 집단으로 모여서 1-2시간의 일회성 교육이자 집합교육으로 나쁜 교육방법만을 반복할 뿐이며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해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교육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시는 전담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빨리 가칭 「인권교육법」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주지역의 장애 인권과 관련한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에 어려움은 물론 과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소외된 지역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인권출장소’ (?) 설치가 이루어지면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와 함께 첫 번째 사업으로 제주지역의 인권관련 통계와 실태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토론 ⑥

#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틀어보기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틀어보기

강 인 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우리나라는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이후, 장애인의 고용, 편의증진, 장애인 기업활동촉진 등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하였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신장을 강조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에 맞물려 제정된 법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애계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출발한 장차법이 시행 된지 11년이 되는 지금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영역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통하여 보장되고 보호 받는 만큼 매우 민감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들은 해당 기본권의 향유에 있어서 장애 때문에 차별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성연 사무국장님의 발제문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권리실현과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

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발제 일부에 대해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먼저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니라 그 내용을 법규로 격상 하는 의견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사법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제13조). 국내법으로는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장차법 제26조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은 대법원의 예규나 법규가 아닌 업무상 가이드라인에 불과 하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심의당시 이를 법규화 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에서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차법 제26조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하고, 사법 관련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법원이 2013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제기 방법 마련관련

- 위 문제는 법49조(차별행위)를 강화 시켜야 한다. 2항 악의적 판단기준을 개정 “전부고려”에서 “전부”를 삭제하여 “고려”로 개정하길 바란다. 위 조문은 토론자가 복지부에 있을 때 개정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엮어진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할 필요 있다.

기관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유사한 상담사례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을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는 지켜지는 선에서.

둘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공익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인권단체, 로스쿨, 시민사회와 협업네트워크 구성필요

셋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여성상담소 등 장애인권기관 등에 상근 변호사 채용으로 상담 업무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서비스 질 담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 필요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가부지원에 의한 장애여성상담소 등 법률에 따라 개설된 장애인권기관들을 통합과 기능별 재배치 필요.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정부 측 패소로 확정  
대법원, 정부 측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다수의 장애인이 포함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길게는 수십 년간 마치 노예와 같이 착취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이 정부 측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사건의 피해자 8명은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는 이들 중 '도와 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건에서만 원고 측의 손을 들

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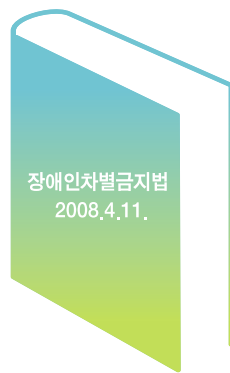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파렴치한 상고심 제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써 환영하는 바이다.











ISBN 978-89-6114-684-5 93330